

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.

제 출 자 : 속초시장

1. 개정취지

-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도모와 자원봉사 참여와 관심 향상
- 각 부서별 개별 조례 일괄 개정으로 자원봉사자 인정 조기 정착

2. 주요내용

가.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(안 제15조)

-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,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장은 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

나. 다른 조례의 개정(부칙 안 제2조)

-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08. 10. 10 ~ 10. 29(20일간)
- 2) 입법예고결과 요약 : 특이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) ①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다만,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다른 감면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이종으로 감면할 수 없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는 체육청소년 기본시설 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 기본액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이용 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 사용자에 한한다.

②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다.

③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
④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1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

제10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3.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: 50퍼센트 감면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〈신설〉	제15조(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) ①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. ② 시장은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다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.
제15조(경력인정 등) (생략)	제16조(경력인정 등)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보험가입) (생략)	제17조(보험가입)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실비지급) (생략)	제18조(실비지급)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19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·지원하여야 한다.